
안산시민브레인스토밍 『청렴톡톡』

안산시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원탁토론회
-반부패정보 제공 가이드-

① 공무원 행동강령

1. 공무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3.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등이 적용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
-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군복무 중인 사병,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 규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4. 행위기준의 기본 원리 : ‘직무관련성’전제

1) ‘직무’란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

2) 직무관련자(민간인)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 개인·법인·단체

-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자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정책, 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그 밖에 기관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3)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 공무원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 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공무원

4) 금품 등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주요내용

①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총 6개장 33개 조문으로 구성, 23개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지시에 대한 처리(4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5조) •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5조의2) •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채용제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5조의6) • 특혜의 배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7조) • 정치인부당한 요구처리(8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9조)
• 부당이득수수금지(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10조의2)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정보이용거래제한(12조) • 공용물 사적사용·수익금지(13조) • 사적노무요구금지(1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권한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13조의 3) • 금품 등의 수수 금지(14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14조의2)
• 건전한 공직풍토(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통지 제한 (17조)

※ 주요개정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18.12.24. 공포, 시행)

- (갑질금지)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18.12.24.공포, '19.3.25.시행)

- (이해충돌방지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18.4.)된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 등을 의원행동강령에 반영
- (갑질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신설된 이해충돌방지규정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출처:2019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② 부패신고

1. 부패신고(Whistleblowing) 란?

-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음
- 외부신고 :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식의 발휘)
- 내부신고 :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사전적·예방적 부패 억제 기능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패통제 수단)

2. 부패신고의 필요성

1)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

부패가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됨에 따라 조직의 내부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정보제공이 필요

2)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부패통제

타율적 통제는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을 갖도록 하므로 내부신고 강조는 이러한 부작용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구성원 누구나 자율적 신고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

3)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조직의 윤리적 건전성 제고

외부인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 및 문제점들을 외부에 알림. 조직 내 부적절한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경고 장치

3. 부패행위란?

1) 공직자의 부패행위 유형

- ①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②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2) 공적재산 부패행위 유형

- ① 뇌물 : 공직자가 선택된 민간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고, 민간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래의 형태

- ② 독직 :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
- ③ 강탈 : 뇌물과 반대로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을 위협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것
- ④ 권한남용 : 행정권에 속하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수사 등 대표적인 부패행위 또는 사적 이익의 유발요인.
국회의 입법 활동은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데 로비의 대상인 재량권이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도 같은 이유에서 로비의 대상이고 또한 부패유발 요인
- ⑤ 사익추구 : 뇌물, 강탈, 독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우회적인 형태의 이득. 금품 외의 방식의 보상. 직무행위의 권한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
- ⑥ 공익훼손 : 가격책정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허가, 시공업체, 납품업체 등의 왜곡에 따른 물적 자원배분 왜곡
인사권의 남용에 따른 인적 자원배분의 왜곡
포상과 처벌의 왜곡에 따른 공정성 왜곡
- ⑦ 정경유착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조직적인 부패행위
- ⑧ 권력형 부패행위 : 조직과 조직간의 유착은 흔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발생
- ⑨ 언론 부패행위 :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기관이 편집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유인
- ⑩ 의료 부패행위 : 전문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개인의 사익을 도모

3) 사례

- ① 6급지방공무원이 취로사업사업자에게 300만원제공받아 과회식비, 과장 출장비 등으로 사용(징역6월 집행유예1년으로 파면)
-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복지보조금 930만원 횡령.
- ③ 대학교 시설과장 등 34명이 학교 창호공사 관련 업체에서 수백만원 ~ 수천만원 뇌물수수료 공무원 28명, 업체 대표 등 총 34명 불구속 기소
- ④ 공기업 임원인 신도시사업단장이 공사편의 대가등으로 4억원 금품등 수수 횡령

4. 부패행위 신고

1) 신고 방법

- 신고자 : 누구든지(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부패행위증거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_044-200-7972, 출장, 부패공익신고앱,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_epeople.go.kr
- 신고처 : 일반국민-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속한기관과 그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①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신분보장: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
- ②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 ③ 신변보호 요청: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
- ④ 그 밖의 보호조치: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이나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3)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 보상금 :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출처:2019제2차청렴교육강사보수교육과정

③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이란?

1) 목적

- 이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3)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14가지 대상업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금지
- 14가지 대상업무
 - ①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에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인허가 취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등의 행정처분 형벌부과에 대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③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개입
 -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자선발에 관하여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⑥ 입찰 경매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⑦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⑧ 보조금등의 배정 지원등에 개입하는 행위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사용 수익점유 하는 행위
 - ⑩ 입학성적등 업무처리 조작
 - ⑪ 병역판정 검사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판정평가등 결과조작 행위

- ⑬ 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 조작 묵인행위
-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에 개입하는 행위

4) 위반시 제재사항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자: 일반인 2천만원이하 과태료, 공직자 3천만원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5)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처음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재차 받았을 때,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6)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8조)

-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 후원·증여등 어떠한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7) 예외조항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8) 예외조항 제2호 시행령

- ①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②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③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와 제공자: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공직자등과 제공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10)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11)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기준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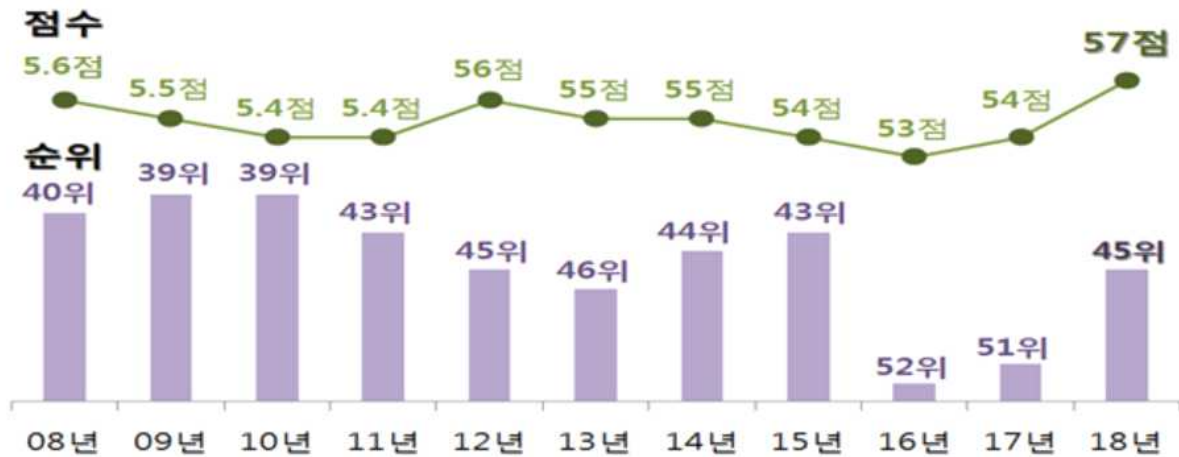
구분	학교교직원, 언론사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1시간	100만원	40만원 (※ 사례금총액한도: 1시간초과시 150%까지 수수가능)

출처:2019제2차청렴교육강사보수교육과정

④ 부패인식지수(CPI)

1. 대한민국 청렴도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 180개국 중 45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순위 9위
 - OECD 36개국 중 : 30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

-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

-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8.3.28.)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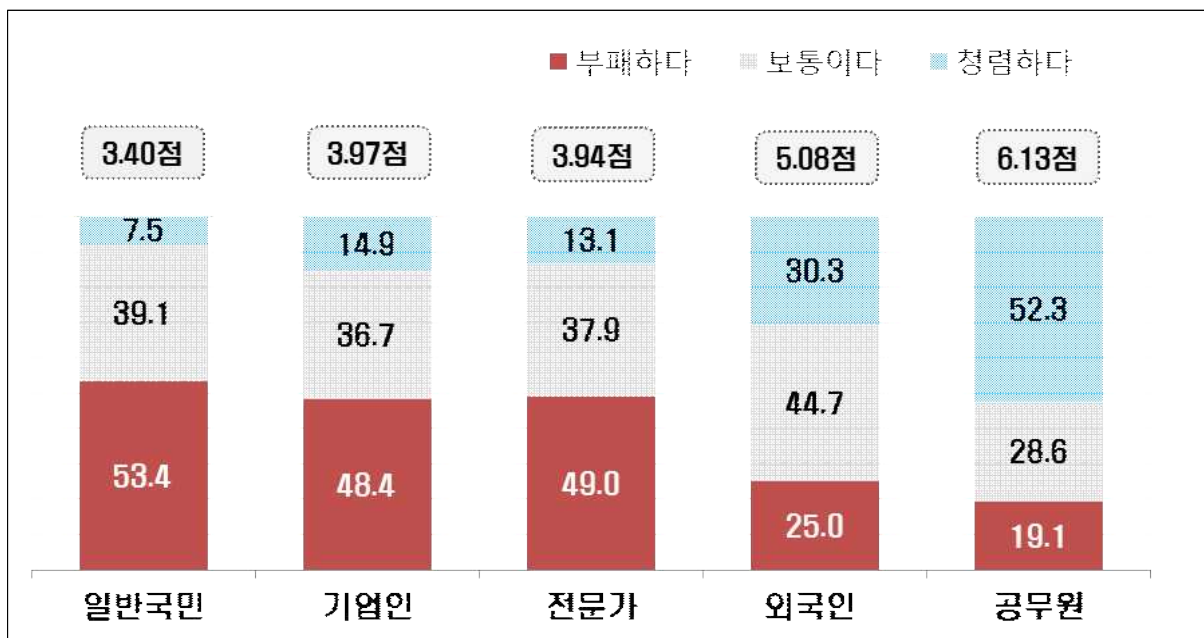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IPI(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09점, 109개국 중 23위를 차지
(출처: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2. 국민권익위 조사 우리사회부패수준 인식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인식]

(단위: %)



[우리사회 부패평가 이유]

(단위: %)

이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8.1	72.3	73.1	46.0	66.3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0.9	11.2	6.5	31.0	10.5
우리 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15.7	6.2	4.5	13.0	7.5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4.8	9.7	14.9	8.0	12.0

[부패발생 원인]

(단위: %)

원 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34.7	46.4	52.2	39.1	47.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4.7	14.7	15.9	20.6	19.6
고비용 정치구조	19.8	9.6	9.7	16.5	15.7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19.6	27.0	19.2	19.8	15.1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	2.49	3.03	3.86	3.50	3.90	3.17	3.17	4.30	4.42	3.62	3.77
기업인	2.29	3.00	3.85	3.60	4.03	2.99	2.90	4.23	4.36	3.10	3.79
전문가	2.50	3.17	4.12	3.45	3.83	3.11	3.19	4.53	4.40	3.23	3.85
외국인	4.18	4.85	5.05	5.00	4.88	4.46	4.36	5.33	5.03	4.84	4.92
공무원	2.74	3.48	6.03	4.51	4.29	3.33	3.64	4.83	5.04	3.93	4.46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	4.70	4.71	4.48	6.90	3.96	3.37	3.54	5.03	4.70	4.76	4.28
기업인	4.34	4.29	4.33	6.16	3.41	3.37	3.58	4.55	4.45	4.58	3.83
전문가	4.42	4.16	4.09	6.15	3.59	2.93	3.57	4.56	4.24	4.44	3.95
공무원	5.75	5.50	5.59	6.99	4.88	4.74	4.88	5.88	5.66	5.80	5.96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응답률]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2.3	35.1	27.9	27.7	18.8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1.0	11.4	20.3	25.0	28.5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16.2	20.4	17.3	14.0	27.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5.1	16.6	15.1	15.3	13.3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7.9	5.9	6.8	5.0	3.4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11.2	4.3	7.1	2.3	3.5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4.0	4.7	3.0	7.0	3.0

5 안산시 청렴정책

1. 안산시 청렴정책

- 2019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임.

1) 2019년 추진목표

- ▶ 종합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 2등급 상향, 외부청렴도 2등급 유지)
- ▶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3등급 → 2등급 상향)

2) 2019 달라지는 주요 청렴시책

- ▶ (중점실천과제) 공사현장 365 컨설팅감사
- ▶ (신규) 권익위 주관 반부패 멘토 & 멘티사업 (안산시&남양주시, 광주시)
- ▶ (신규) 프리톡~ 사내 소통방송(공보관실)
- ▶ (신규) '시장님과 도란도란' 청렴 공감마당 실시
- ▶ (개선) 인사고충 상담체계 활성화

3) 우리시 청렴도 현황 --- 종합 2등급(외부 2, 내부 5)

구분 \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목표)
○ 종합청렴도	7.73(3등급)	⇒	8.05(2등급)	⇒	8.10점이상(2등급)
○ 외부청렴도	7.76(3등급)		8.48(2등급)		8.50점이상(2등급)
○ 내부청렴도	7.63(3등급)		6.93(5등급)		8.00점이상(2등급)

2. 2019 안산시 청렴시책 추진 방향

함께하는 청렴, 실천하는 청렴, 확산하는 청렴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청렴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 청렴거버넌스 운영
2) 부패위험 제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예방활동 강화 ▣ 법규준수 시스템 운영 ▣ 투명 행정 실천
3) 청렴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내실화·인식제고 ▣ 수범사례 공유 확산

1) 청렴생태계 조성

①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

- ① 청렴마일리지(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② 청렴 프리톡~ 사내 소통방송 추진
- ③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공감 마당
- ④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운영
- ⑤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 ⑥ (내부협업) 청렴지기 수다방

② 청렴거버넌스 운영

- ①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 ② 안산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2) 부패 예방활동 강화·투명 행정 실천

① 부패 예방활동 강화

- ①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② 인사고충 상담체계 활성화
- ③ 공사현장 365 컨설팅감사
- ④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수당지급

② 법규준수 시스템운영

- ①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②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③ 클린(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강화
- ④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익신고창구 운영

③ 투명 행정 실천

- ① 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현황 공개
- ② 반부패·청렴자료 및 감사결과 공개

3) 청렴문화 정착

① 청렴교육 내실화 · 인식제고

- ① 맞춤형 청렴교육
- ② “찾아가는 청렴아카데미” 운영
- ③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자가진단
- ④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청렴도) 진단

② 수범사례 공유 확산

- ① (외부기관협업) 반부패 멘토 & 멘티 사업
- ② (민관협업) 민관 청렴워크숍

4) 「1기관 1실천」 중점 추진과제

- 공사현장 365 컨설팅감사 실시
- (운영기간) 3월 ~ 12월
- (대 상)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 (운영방법) 감사반 편성(6개조 18명)
- (주요내용) 품질 · 안전, 대금지급의 적절성, 사전 이행절차, 현장시공 이상 유무, 사전심사결과 반영 적정여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출처:2019안산시 반부패·청렴도향상계획

⑥ 갑질

1. 공무원 갑질

1) 공무원 갑질의 개념

“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2) 갑질의 유형

- ①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민원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 부여 목적의 갑질 행위 (공무원 → 국민)
- ②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조직내 상급자의 이익 추구 목적 또는 하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목적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공무원 → 공무원)
- ③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행위(기관 → 국민)
- ④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상급기관 → 하급기관)
- ⑤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민원인, 부하직원, 하급기관 등에 대한 갑질 행위

2.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시행

-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공무원 갑질 행위 개념 및 유형 구체화,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 등 포함...18일 국무회의 의결
 - # △△시 A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심야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김
 - # 공공기관인 B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상용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
 - # ○○학교 C교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빈 그릇은 다시 영양사가 치우도록 함
 - # ◇◇시의회가 대규모 의원 방문단을 구성하여 외국 전시회를 단순참관하는 해외출장을 가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
- 앞으로 공무원들이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나타난 A과장의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B공사의 행위는 ‘공공기관→국민’에 대한 갑질, C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그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의 거절의무를 신설하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출처:2018.12 권익위보도자료

7 공익 신고

1. 공익침해행위

1)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2)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2. 공익신고

1)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2) 공익신고의 필요성

-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민간의 부패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익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합니다.

3)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내용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6)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

를 신고자에게 통보



7)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8)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권고
- 책임감면
- 권익위에 보호 요청
-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신고자), 포상금(내·외부 신고자, 최대 2억원) 및 구조금(내·외부 신고자) 지급
- 보호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민권익위원회